

담배사업법 중 개정 법률안

Opening a Court law in the Tobacco Enterprise law

재경부 재정자금과 자료제공

담배사업법 중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제25조의3 및 제25조의4로 하고,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25조의2(담배성분의 표시)

1)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배 1개비의 연기중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의 갑포장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에 표시하여야 한다.

2)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할 성분의 종류, 측정기준, 측정기관의 지정, 표시방법 및 허용오차의 범위, 성분표시의 생략 그 밖에 성분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3) 제25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분과 그 함유량의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성분의 함유량이 허용오차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

2. 제27조의2(벌칙)

제27조의 2에 제5(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분과 그 함유량이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각 성분의 함유량을 허위로 표시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)를 신설한다.

제27조의3 본문 중 “200만원 이하의 벌금”을 “500만원 이하의 벌금”으로 하고, 동조에 제3호의2(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의 수입 또는 판매의 제한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동조 제4호중 “제25조의3”을 “제25조의4”로 한다.

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또한 신·구조문 대비 내용은 [표 1]을 참조하면 된다.

(표 1)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〈신 설〉</u>	제25조의 2(담배성분의 표시) ①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배 1개비의 연기 중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의 갑포장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에 표시해야 한다.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할 성분의 종류, 측정기준, 측정기관의 지정, 표시방법 및 허용오차의 범위, 성분표시의 생략 그 밖에 성분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③ 제25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분과 그 함유량의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성분의 함유량이 허용오차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
<u>제25조의2(제조업자의 공익사업참여)</u> ①~⑤(생략)	<u>제25조의 3(제조업자등의 공익사업 참여)</u> ①~⑤(현행과 같음)
<u>제25조의 3(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제공 등의 금지) (현행과 같음)</u>	<u>제25조의 4(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제공 등의 금지) (현행과 같음)</u>
제27조의 2(벌칙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~4. (생략)	제27조의 2(벌칙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~4.(현행과 같음)
<u>〈신설〉</u>	5. 제2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분과 그 함유량이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각 성분의 함유량을 허위로 표시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
제27조의 3(벌칙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~3. (생략)	제27조의 3(벌칙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~3. (현행과 같음)
<u>〈신설〉</u>	3의 2. 제25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의 수입 또는 담배의 제한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.
4. 제25조의 3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품제공등의 행위를 한 자	4. 제25조의 4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품제공등의 행위를 한 자.